

야생동물 보호·관리 강화...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동물원 등에서 전시되는 동물의 복지와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규칙’ 및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 * 동물원 허가제 전환 등 전시동물 복지 강화를 위한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22.12.13. 공포, '23.12.14. 시행)
- ** 야생동물 운송시 준수사항, 동물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 금지 등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22.12.13. 공포, '23.12.14. 시행)

먼저,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 설립 절차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이 정해졌다.

- * 그간 동물원은 최소한의 전시 및 사육시설만 갖추면 쉽게 등록할 수 있었고, 각종 관리 규정은 선언적 수준으로, 전시 동물의 복지확보에 한계가 있었음

구체적으로 동물원의 경우 앞으로는 휴식처나 바닥재 등 야생동물 특성에 맞게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등 강화된 허가요건을 갖춰야 하며, 동물원 검사관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동물원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동물원은 안전 및 질병 관리, 복지 증진 등 구체적인 동물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휴·폐원 중에 동물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허가권자의 감독 의무가 강화됐다.

기존에 동물원으로 등록하여 운영 중인 동물원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13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유예기간 내에 허가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기존 사업자가 변경된 동물원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다.

다음으로, 개정된 ‘야생생물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를 금지하되, 기존 전시 관련 영업을 영위하던 자에게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야생동물에 대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과태료 부과기준: 1차(150만원), 2차(200만원), 3차(300만원), 4차 이상(500만원)

유예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13일까지 영업지가 소재한 시·도지사에게 야생동물 전시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동물원 등 전시시설로 야생동물을 운송할 때 적합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는 등 운송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새롭게 도입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과태료 부과기준: 1차(20만원), 2차(40만원), 3차 이상(60만원)

이외에도 특정 지역에 밀집 서식하여 양식업, 내수면어업 등의 경영 또는 영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와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마귀류를 새롭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아울러 야생동물 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허가·신고 창구가 새롭게 도입(2023년 12월 14일 정식 운영)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되고, 관련 정보를 환경부가 통합 관리*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명시했다.

* 그간 멸종위기종이 아닌 야생동물의 수입, 포획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하여 허가, 신고 실적 통계 구축 등 정보의 통합 관리에 한계가 있었음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 권한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에 위임되며, 야생생물 서식실태 조사 및 야생동물 보호시설 운영 업무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 위탁되는 등 개정된 ‘야생생물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위탁 근거를 명시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동물원의 동물 복지 관리가 강화됨과 동시에 동물원으로 등록(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여 동물 복지에 적합한 시설과 기반을 갖춘 곳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유도하고, 야생동물 운송 과정에서도 동물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관리 제도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 붙임 1.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개정 내용.
 2. 동물원수족관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 내용.
 3. 전국 동물원 개요.
 4. 야생생물법 개정 개정 내용.
 5.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 내용. 끝.

담당 부서 <총괄>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	책임자	과 장	정 환진 (044-201-7245)
		담당자	사무관	양승조 (044-201-7244)
			사무관	김세현 (044-201-7243)



< 동물원·수족관 허가제 도입 >

- 그간 동물원은 등록기준 충족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여 보유동물 복지확보 및 질병·안전관리에 취약하였는바,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여 허가요건 충족 시 동물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강화(법 제8조)

<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등 관리 강화 >

-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영업정지가 보유동물의 관리에 현저히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조 및 제11조)

< 전문 검사관 도입 >

- 동물원·수족관 허가·점검 시 사육환경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를 검사관으로 위촉함(법 제12조)

< 보유동물 관리 강화>

- 휴원신고 기준을 6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하고,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사후신고를 가능하도록 하여 미개방에 따른 보유동물 관리를 강화함(법 제13조)

< 동물원·수족관 운영자와 근무자의 금지행위 >

- 보유동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행위 금지, 공중의 오락 목적으로 올라타기 등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 제한(법 제15조)

< 동물원·수족관에 대한 관리 강화 등 >

- 안전관리지침 배포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보유동물의 건강상태 정기검사 근거 마련, 근무자에 대한 법정교육 의무화 및 법정교육 기관 지정 근거 마련(법 제16조~제23조)

< 동물원·수족관 설립기준 강화 >

- (허가제 전환) 서식환경·전문인력 등 허가요건* 충족 시 동물원·수족관 설립이 가능하며, 기존 동물원은 5년내 허가를 득하도록 유예
- * 동물서식환경 및 전문인력 기준, 질병·안전관리계획, 휴·폐원시 동물관리계획 등
- (검사관 위촉 기준) 수의사 취득후 동물원 5년 이상 근무, 동물원에서 7년 이상 종사, 관련 업무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 보유동물 복지 제고 >

- (실태조사 및 시설검사) 환경부·해수부가 5년마다 시설 운영현황, 동물복지 등에 대해 실태조사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
 - 허가권자의 정기검사(매 5년) 및 수시검사(필요시) 실시 규정 마련
- (금지행위) 동물을 동물원 외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행위와 올라타기·만지기 등 고통·스트레스를 가하는 등 동물복지 저해행위 금지

< 보유동물 안전·질병관리 강화 >

- (안전관리) 허가 시 안전관리계획 제출·평가, 동물원·수족관 보유동물의 생태계교란 방지를 위한 포획·격리조치 등 관리 강화
- (질병관리) 매일 육안점검(사육사 실시), 연 1회 육안검사·분변검사·혈액검사·영상검사 중 1가지 이상 실시(수의사 실시)

< 시설개방 및 휴·폐원 기준 강화 >

- (의무개방일수 확대) 기존 30일→90일로 확대하여 시설 정상 운영 유도. 질병 등으로 미개방하는 경우는 개방한 것으로 인정
- (휴·폐원시 관리 강화) 휴원신고 대상 미개방 일수를 축소(6개월→3개월)하고, 휴·폐원시 동물관리계획서 제출 및 확인절차 의무화

< 동물원·수족관 관리역량 강화 >

- (거점동물원) 우수 역량을 보유한 동물원·수족관*에 대해 지정, 교육·질병·안전·종보전 등 관련하여 역량강화 및 자문 활동 이행
- * 면적 1만㎡ ↑, 동물병원, 교육·연구시설, 검역·수의장비, 인력기준 등 지정요건 신설
- (의무교육) 수의사·사육사 및 1년이상 근무자는 연 1회 교육 이수

붙임 3**전국 동물원 개요 ('22.12. 기준)**

□ 동물원 등록 현황(총 114개소)

- (운영주체) 공영동물원 : 24개소, 민간동물원 : 90개소
- (시설형태) 실내외 : 66개소(공영20, 민간46), 실내 : 48개소(공영4, 민간44)

<운영 주체별·규모별 동물원 현황>

합계	공영동물원(24)		민간동물원(90)	
	야외공간확보	실내동물원	야외공간확보	실내동물원
114	20	4	46	44

<권역별 동물원 현황>

합계	수도권	강원·충청권	호남·제주권	영남권
114	37	24	28	25

□ 동물원 보유동물 현황

- (보유동물) 총 48,911개체
 - (법정보호종) 국제적멸종위기종 6,247개체, 국내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 698개체

(단위 : 개체, '22년 말 기준)

합계	국제적 멸종위기종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CITES 제외)	일반종·가축 등
48,911	6,247	698	41,966

※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이면서 국내멸종, 천연기념물로 중복지정된 종은 CITES로 분류하고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에 산입하지 않음

< 야생동물 수입 실적 등 정보 관리 강화 >

- 야생동물의 수출·수입·양도·양수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이와 관련된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
- 수입 실적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

-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등록)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없음, 다만 예외적으로 전시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부령으로 정함(법 제8조의3)

* · 포유류가 아닌 분류군 중 인수공통질병 전파 우려 및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은 야생동물의 경우, · 연구·교육 등 공익적 목적의 경우

<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설치 >

- 전시행위 금지 등으로 인해 유기되거나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 근거 마련(법 제8조의4제1항)

< 야생동물 운송시 준수사항 신설 >

- 야생동물을 운송할 때 적합한 먹이와 물 공급, 충격과 상해 방지 등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을 운송하려는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명시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법 제11조)
- 야생동물을 운송하려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정보제공의 요청 범위 >

-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의 허가에 관한 정보,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행령 제4조의2)

< 야생동물 수렵자 가입보험 보장액 조정 >

- 야생동물 수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수렵자 가입 보험 보장액* 조정(시행령 제35조)

* 사망 : 1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부상 : 1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후유장애) 및 3천만원 이상(단순부상)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국립생물자원관장 위임), 야생생물 서식실태 조사 및 야생동물 보호시설 운영(→국립생태원 위탁), 야생멧돼지 ASF 확산 방지시설 운영·관리(→한국환경보전원 위탁) 근거 마련(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제39조의2)

< 전시금지 예외사항 >

- 앵무목, 꿩과, 거북목, 독이 없는 뱀 등 일부 종은 전시가 가능한 종으로 정하고, 서식지외보전기관 및 과학관 등 공익 기관에서의 전시는 현행과 같이 가능하도록 규정(시행규칙 제7조의4 및 제7조의5)

< 야생동물을 운송하려는 자 >

- 동물원, 서식지외보전기관, 학술·연구 또는 보호·증식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연구기관, 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으로 야생동물을 운송하려는 자(시행규칙 제10조)

< 유해야생동물 추가 지정 >

-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양식업, 낚시터업, 내수면어업 등의 경영 또는 영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와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마귀류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시행규칙 별표 3)